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성중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보안·하이텔PSPD, 나우누리유니텔참여연대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담당기자, 각 정당및 국회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김형완 723-5302)
제 목 선거법개정 타결에 대한 논평
날 짜 1998. 4. 27.(총 2 쪽)

보 도 자 료

선거법개정, 개혁적 내용이 없다 -선거법개정 타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논평-

1998. 4. 27.(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 선거법 개정이 난항 끝에 결국 부분 타결되었다. 여야가 미합의 쟁점을 분리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연합공천문제 등의 쟁점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못한 채, 지방의원 정수 감축,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 소형 명함형인쇄물·현수막게시 금지, 유급선거운동원수의 감축, 국회의원등의 주례금지 등에만 합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합의가 상당부분 지체되면서 '6월지방선거 불가론'이 고개를 들었던 현실에 비추어 일부 쟁점이나마 타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나 합의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와 문화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가 상당부분 외면되고 말아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2. 이번 선거법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노조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미 지난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기도 하였지만, 그동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었다. 그 밖에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광역의원의 약 30%, 기초의원의 24%를 감축하고, 소형인쇄물중 명함형 인쇄물의 제작 배포와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 점, 유급 사무원의 수를 감축하게 된 점은 일정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선거비용이 약 1천 306억원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국회의원의 주례금지규정의 신설 역시 그동안 우리 선거가 대부분 연고와 정실에 의해 치루어진 점에 비추어 정책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선거문화창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쟁점들이 처리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선 이번 선거법 개정이 애초에 정치개혁이라는 큰 맥락에서 접근했어야 할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에 쫓겨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일부 조항들만 서둘러 개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지방의원 정수감축의 경우 그 폭이 어떤 구체적인 근거에 의했다기보다는 단지 여론에 밀려 다분히 임의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둘째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금지규정이 여전히 존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존중,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었다. 특히 이 규정의 존치는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부분과 형평성의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선거기간 동안의 여론조사 금지도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던 부분으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세째 이번 선거법 협상이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데 급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공공의 정치사회적 이익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는 데만 열심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축·부의금을 1만 5천원의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선으로 후퇴한데다가 이에 대한 처벌조항도 현행 2백만원에서 5십만원의 벌금으로 완화했다. 공직자 사퇴시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줄인 것도 실제로는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주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번에 한해서는 이 법 시행 3일 이내의 공직 사퇴도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둔 것 역시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법을 취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직자치단체장의 타공직출마금지도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침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4. 참여연대는 이미 노사정위원회처럼 여·야, 시민단체가 고루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최근 여당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지가 결코 호지부지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정치개혁이 미뤄진다면 선거문화의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은 커녕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 냉소만 부추기게 될 것이기에 범국민적 정치개혁특위의 신속한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